

“포장 때문에 수출 못 한다” 8월 12일 시행 EU 포장재 규정 PPWR

[현장 특파원]

‘4대 중금속·과불화화합물 제한 (13p)

[전문가 칼럼: 뉴욕 통신]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신청 절차와
핵심 쟁점 (22p)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다” 5월 20일부터 중국의
온라인 식품 규제 대상 (19p)

[이주의 초점]

웃으며 악수한 트럼프·시진핑... ‘빅딜’은 없었다 (4p)

[위클리 뉴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무선충전기vs.시계vs.조명’
다기능 제품 품목분류 명확화
수입 닭고기, 돼지고기 5월 29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정부·민간 협업 16조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공급 (7p)

[판례 동향]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및 ‘수입’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 (31p)

[품목분류 동향]

‘그밖의 의류 vs. 웨이스트코트’ 산업용 안전조끼의
HS Code (39p)

PPW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5월 18일(통관 제2179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웃으며 악수한 트럼프·시진핑...
'빅딜'은 없었다

07 Weekly News

현장 특파원

- 13**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은 EU 포장재 규정 PPWR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 19**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다...
5월 20일부터 중국 온라인 식품 규제 변화

전문가 칼럼

- 22**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Int'l Dispute Resolution and Global
Trade Practice팀
대한민국·미국 변호사(뉴욕주)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핵심 쟁점

관세행정실무해설

- 28** 질의응답사례
오렌지 착즙주스의 HS Code

판례동향

- 31** 관세판례해설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및 ‘수입’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

품목분류동향

- 39** 세번 바로잡기
산업용 안전조끼의 HS Code
-

웃으며 악수한 트럼프·시진핑... ‘빅딜’은 없었다

대만·관세·히토류·호르무즈까지... 5월 14~15일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5월 14~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관계 안정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제 회담의 핵심은 관세·첨단기술·에너지·대만 문제를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은 내포돼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으나, 회담 전후 미국과 중국의 현지 언론·싱크탱크들은 공급망·기술패권 대립은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미·중 최고위급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며, 중국은 예포 21발과 국빈 만찬, 의장대 사열 등을 동원해 국빈 예우를 제공했다.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에서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회담장 안에서는 대만, 이란 등 글로벌 경제질서를 흔드는 민감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 “대만 잘못 건드리면 관계 위험” 미·중 정상, 공개 경고와 협력 메시지 병행

미국 매체 CNBC는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관계 전체가 심각한 위험(great jeopardy)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5월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CNN 역시 시 주석이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절대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미국 재무장관 스킷 베선트는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매우 단호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 화법이 자칫 대만 문제에서 돌발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국이 14일 회담 이후 공개한 발표문에서는 관계 안정과 경제협력이 강조됐다. 중국 관영매체 CGTN은 양국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된 미·중 관계(constructive China-US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협력 중심의 안정, 관리 가능한 경쟁, 평화 보장형 관계를 언급하며 향후 3년 이상을 바라보는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협력 확대” 강조했지만, ‘빅딜’은 없었다

회담 분위기와 달리 실제 미·중 경쟁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은 관세 인상 유예와 일부 공급망 협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첨단산업 패권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등 이목을 끄는 타협은 부족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희토류 통제와 배터리·태양광 공급망 장악력을 무기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AI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엔비디아(Nvidia) AI 칩 수출규제를 실시해 왔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이번 회담 일정에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AI 칩 수출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없어도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이 사실상 동맹국과 중국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안보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CNBC는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제품 구매를 늘릴 것이라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5일 기준 아직 확실한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리어 USTR 대표는 올해 안에 농업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항공기 구매도 이목을 끌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C 아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수라자나 테와리는 15일(현지시간) “많은 분석가가 예상한 것보다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미·중 관계 개선의 상징적 거래라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계약 여부와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새로운 합의를 달성했다”며, “중국과 미국의 건설적인 전략 안정 관계를 새 관계의 방향으로 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으나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현지 언론·연구기관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 복원보다는 ‘갈등 관리’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출컨설팅기업 EC21R&C의 안희정 연구원은 회담 전인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협상은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6년 출범한 전략경제대화(SED)와 1983년 시작된 미·중 무역공동위원회(JCCT) 역시 결국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책과 유화책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엔비디아 AI 칩 판매 허용, 대만 무기판매 보류 등 상반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2기 대중 전략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 상황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코넬대학교의 앨런 칼슨 교수 역시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용의 부재 자체가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예측했다. 즉 양국 모두 실질적 양보 없이 외교적 성과를 연출하는 데 더 집중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외교·안보 연구기관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역할을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이후에도 미·중 갈등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세전쟁은 공급망·에너지·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미 확장됐고, 양국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중 관계 개선 여부보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무기화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될 지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BBC 수란자나 테와리 기자는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양국 간 관계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췄으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관세,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와 핵심광물은 여전히 양국 간 입장 차이가 깊어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웃으며 악수한 장면과 달리, 관세·기술·에너지·안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세계 통상 질서를 흔드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26개국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충전기vs.시계vs.조명' 다기능 제품 품목분류 명확화

관세청이 무선충전기·디지털시계·조명이 결합된 복합기기를 '충전기'로 분류하는 등 다기능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열린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무선충전기와 디지털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다. 해당 제품은 시계(HS 제9105.11-0000호·기본관세 8%) 또는 전기식 조명(HS 제9405.21-0000호·기본관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배터리 충전기(HS 제8504.40-3010호·WTO 양허세율 0%)로 최종 결정됐다.

쟁점물품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
결정 세번	제8504.40-3010호
경합 세번	제9105.11-0000호, 제9405.21-0000호, 제8504.40-3010호
이미지	

위원회는 제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충전 기능이 최우선으로 강조된 점과 단순 부가기능인 시계·조명에 비해 세계무선전력컨소시엄(WPC)의 국제표준인 Qi(치) 기반 고속 무선충전 기술이 적용된 점을 근거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무선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다기능 복합제품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의 관세 부담과 수출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관련 품목분류 기준도 함께 정리됐다. 위원회는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을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HS 제

8708.29-0000호)’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HS 제7326.90-9000호, (인도)기본 15%·미 품목관세 5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HS 제8302.30-0000호, (인도)기본 15%], 스피커 부분품[HS 제8518.90-9000호, (인도)기본 15%],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HS 제8708.29-0000호, (인도)기본 15%·미 품목관세 25%]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심의했다.

쟁점물품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는 스피커 그릴(덮개)
결정 세번	제8708.29-0000호
경합 세번	제7326.90-9000호, 제8302.30-0000호, 제8518.90-9000호, 제8708.29-0000호
이미지	

위원회는 이 제품이 스피커 모듈 자체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춰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니라 스피커와는 분리돼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해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자동차부품 품목관세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더욱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25% 수준의 추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철강제품 일부에는 최대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실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Toggle Switch(MT4218)	제8536.50-9090호(간이정액환급 10원)
2	Toggle Switch(ST-4103-C3J, ST-5101J)	제8536.50-9090호(간이정액환급 10원)
3	Chip Dyed Flim(ST06K·ST16K·ST36K·ST51K)	제3920.62-0000호(덤핑방지관세 7.31~36.98%)
4	Insulation Tape(SE62-00055A)	제3926.90-9000호(간이정액환급 10원)
5	Insulation Tape(SE62-00079A)	제6814.10-0000호(간이정액환급 10원)
6	Insulation Tape(V122-00023A)	제3920.20-0000호(간이정액환급 50원)
7	Injector	제8543.90-9000호(WTO양허 0%)
8	W507 Speaker Grill Front Door	제8708.29-0000호(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25%)
9	MTS MACHINE; MAST(WQ006)	제9018.90-8190호(WTO양허 8%)
10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WDS100)	제8504.40-3010호(WTO양허 0%)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를 수령 및 조회할 수 있었지만,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현재·과거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직접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라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입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수입 닭고기·돼지고기 5월 29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고등어 등 어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관세과에 따르면, 수입 닭고기는 5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돼지고기는 2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신선란 수입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한 것에 이어 5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개, 27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6월에는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더 수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14일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로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5월 15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산물 중 소비가 많은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4종은 5월 중 정부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수인 품목들의 공급망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이다. 특히 요소 비료는 공급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전년 판매량 범위 내에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 자재인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의 경우 건설업계와 협력해 내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필수 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망 불안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장기 성장 전략 마련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 ▲에너지 대전환,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전략은 6월 말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정부·민간 협업 16조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공급

정부가 민간 금융권 및 조선업계와 손잡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상생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조선산업 공급망 보증 1조원을 포함한 총 1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 조선 3사와 하나·우리·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으며, 우대금융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특히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을 위해 특화된 지원이 이뤄졌다. 조선 3사와 은행들이 무역보험금에 신규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은 최대 25%p 인하된 우대금리와 0.7%의 낮은 보증요율로 최대 3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및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된다. 하나·우리·신한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등 협약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해외 사업 수요를 공동 발굴해 기업의 중장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춘 컨설팅 지원,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개별 수출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월 11일 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지사화사업이란 현지 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막아주는 '단기수출보험'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대출'로 구성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신용보증 한도를 2배까지 우대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참여 기업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1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100%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방식을 채택해 복잡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 서준식 기자 |

관세청, 수입업체 탈세·폭리 조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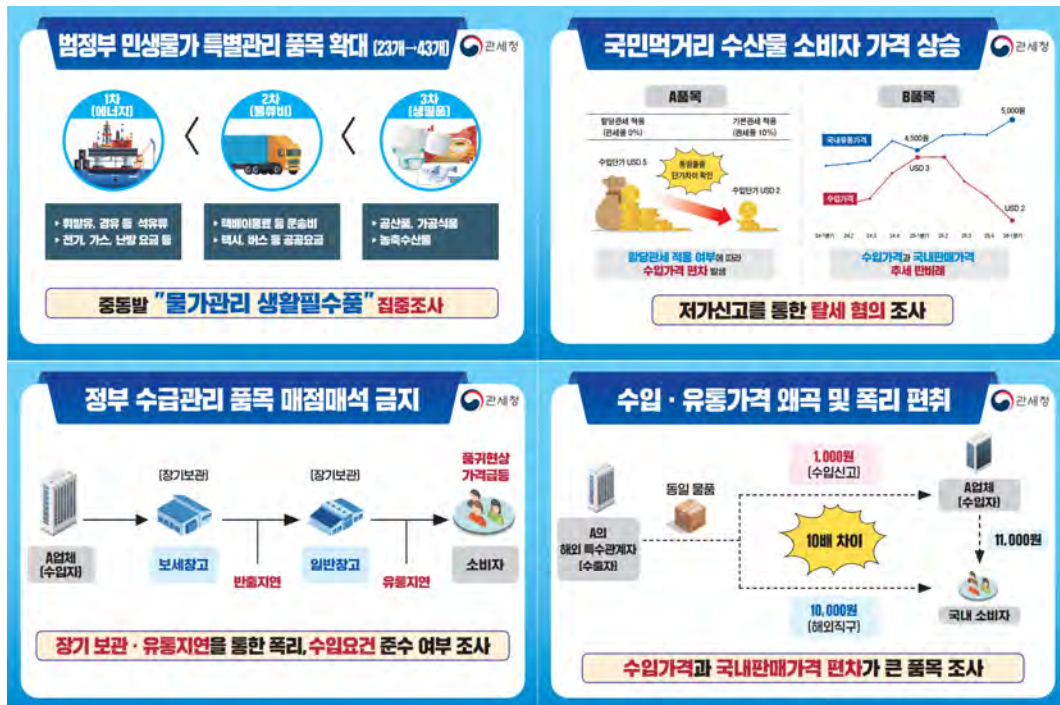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가격을 왜곡하거나 유통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실시된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어 5월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된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국내 유통가격 간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일부 업체가 시장 혼란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에너지·공산품·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입가격 조작이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 행위는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입·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는 관계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출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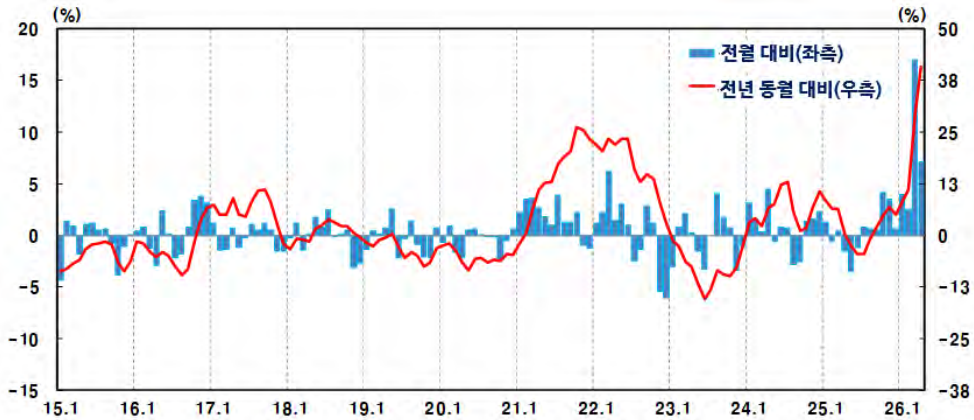
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물가... 수입물가는 10개월 만에 꺾여

반도체 가격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2026년 4월 우리나라 수출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5월 15일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4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87.40으로 전월 대비 7.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8% 상승률이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 강세가 수출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월 대비 16.9% 상승했고, 화학제품도 7.7% 올랐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25.0%(전년 동월 대비 232.8%), 컴퓨터 기억장치가 71.4%(전년 동월 대비 149.2%), 프로필렌이 23.6% 각각 상승했다.

● 2026년 4월 수출물가지수 ●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4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8.12로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10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무역지표 역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흐름이 반영됐다. 4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상승했고 수출금액지수는 50.2% 급등했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광산품과 석탄·석유제품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6.8% 상승했으며, 수출가격 상승폭이 수입가격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4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상승했다. | 김성은 기자 |

[인사] 관세청장 임명



제35대 관세청장 이 종 욱 (李宗昱)

행시 43회

전 관세청 차장

전 관세청 기획조정관

전 관세청 조사국장

전 관세청 통관국장

〈 2026년 5월 16일자 〉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은 EU 포장재 규정 PPWR

4대 중금속·과불화화합물 제한부터 재활용 의무화까지... 유럽발 포장 규제 쇼크

유럽연합(EU)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포장 규제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포장재의 제조·생산·유통·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전자업계 등 산업 전반에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관세사를 대상으로 열린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합동 세미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최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설명회’에서 논의된 PPWR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PPWR은 지난 1월 22일 공시된 EU 규정(EU 2025/40)으로,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시장에 최초 공급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유해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 및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 구비 의무 등을 부과한다.

EU는 포장재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공급망 전체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하

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PPWR은 EU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EU 회원국별 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으로 운영해 왔지만,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자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과 통일성을 강화했다.

PPWR이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복합재질 포장과 다층 필름 구조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합동 세미나’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류하나 수석연구원은 “식품·화장품 산업의 민감도가 높아 보이지만 특정 품목에 국한된 규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구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고, 산업용·가정용 구분 없이 모든 산업군이 PPWR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PFAS 규제 직격탄··· 식품업계 공급망 비상

당장 PPWR 시행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출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4대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이다. 오는 8월 12일부터 EU 내 모든 포장재는 PFAS 및 중금속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KTR 류하나 연구원은 “EU 당국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유해물질 관리”라며, “포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PPWR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 내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농도 합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리 포장은 200ppm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재생유리 사용 시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PFAS 규제다.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 농도는 개별 PFAS 기준 25ppb, 합산 기준 250ppb, 총 불소 기준 50ppm을 넘을 수 없다.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까지 규제 대상이다. PFAS는 방수·방유 기능 때문에 피자 박스, 테이크아웃 용기, 종이 빨대, 식품 포장 코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업계에서는 규제 시행 시 테이크아웃 포장재는 물론, 가공식품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포장재는 통관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8월 12일 이후 통관 예정인 물량은 사전에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PWR 시행 앞둔 수출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KTR의 류 연구원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자가 포장 설계와 재활용성, 유해물질 관리, 포장 최소화 요건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포장재 구분**: 우선 기업들은 자사 제품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류 연구원은 혼동하기 쉬운 사례로 의류 배송 시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를 들었다. 옷걸이를 별도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가 아니지만,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로 간주

된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냥갑, 용기 잠금장치 일부를 구성하는 마스크라 브러시, 스테이플, 티백 파우치, 프린터용 카트리지 등도 포장재 예시로 제시했다. 결국 무엇이 포장재인지 판단하는 것이 PPWR을 대비하는 첫 단계가 되는 셈이다.

② 포장 관련 유해물질 검사 및 데이터 확보: 기업들은 판매 제품의 포장 단계와 구성품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병에 담긴 주스 제품이라면 병마개·라벨·병 본체 같은 ‘판매포장’뿐 아니라 수축 필름 형태의 ‘그룹포장’, 플라스틱 밴드·스트레치 필름·목재 팔레트 등 ‘운송포장’까지 모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을 포함한 전체 포장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포장 단위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포장재 사용 용도, 포장 부품별 재질 정보, 도면 또는 사진, 포장 부품별 중량 정보, 공급업체 확인자료 또는 시험자료 등을 확보한 뒤 4대 중금속과 PFAS 함량 증빙자료까지 준비해야 한다.

4대 중금속은 모든 포장 및 포장 부품에서 확인해야 하며, PFAS는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인 경우 점검한다. 기본 문서를 우선 확보하되 자료가 없을 경우 시험인증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부의 김다혜 과장은 반드시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것을 강조했다. 제조사의 자체 시험분석 자료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다층으로 이뤄진 식품 포장재의 경우 제조사가 분석 대상을 자체 판단해야 하지만, 김 과장에 따르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층에서 발생 가능한 PFAS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포장재 관련 주요 준수사항 ●

구분	내용	위임 이행법	시행일
제5조	유해물질 최소화 중금속 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산 100mg/kg 이하) 과불화화합물(PFAS) 금지	-	2026.8.12.
제6조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도입 A(95%↑), B(80%↑), C(70%↑) ※ 금지: 70% 미만(2030년~), C등급(2038년~)	2028.1.1.	2030.1.1.
제7조	재생원료 사용	의무사용 도입 및 품질 인증 필요	2026.12.31. 2030.1.1.
제8조	바이오플라스틱	환경영향 평가(2028.12.) 후 정책 방향 결정	- -
제9조	퇴비화	티백, 과일·채소 라벨, 비닐봉투 의무화	- 2028.2.12.
제10조	포장 최소화	-	- 2030.1.1.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재사용 가능한 포장임을 인정	- 2026.8.12.
제12조	라벨링	분리배출, 유해물질 표시, 보증금 반환 등	2026.8.12. 2028.8.12.
제24조	과대포장	포장 빈 공간 비율 최대 50% 이하 제한	2028.2.12. 2030.1.1.
제26조	재사용 가능 포장과 관련된 의무	EU 운영자에게 서면 확인 요청	- -
제29조	재사용 목표	산정방법은 2027.6.30. 제정	- 2030.1.1.

③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에는 포장재 및 용도, 설계 도면, 구조 및 포장 구조, 작동 원리 설명, 표준 및 사양 목록, 재활용성 최소화, 시험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재사용 가능성 규정에 따라서는 가능한 많은 횟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내용물을 비우는 과정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지 등을 기술문서로 입증해야 재사용 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적합성선언서 작성 및 자료 보관:** 적합성선언서는 부속서 VIII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일회용 포장재는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제조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자료 보관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TR의 류 연구원은 제품별 포장 구조와 부품 구성을 전수 점검하고 판매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함한 전체 포장 시스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 부품별 재질 정보, ▲중량, ▲공급업체 자료, ▲시험성적서, ▲PFAS·중금속 분석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활용성 평가와 적합성선언서 작성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⑤ **생산자 등록:** 아울러 생산자 등록(Register of Producer)도 필요하다. 생산자는 ▲EU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최초 출시하거나, ▲포장된 제품을 해당 국가에 최초 출시하거나,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돼 원거리 계약 방식으로 다른 EU 회원국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수입자·유통업체 등을 의미한다.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생산자는 회원국별 등록부에 포장재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EU 등록 시스템은 2027년 중반쯤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안 되면 EU 시장서 퇴출

사실 PPWR의 가장 큰 변화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재활용 가능성 등급제'다. EU는 모든 포장재를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미만으로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포장재는 사실상 시장 출시를 금지할 계획이다. 포장재가 물리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적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복합재질 포장재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류하나 연구원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층 필름 구조는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활용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색 PET 역시 재활용 효율 문제로 사용 제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2030년부터는 택배·운송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 이하로 제한된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이중 벽면이나 가짜 바닥 구조도 금지된다. 포장 기능 유지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술문서 제출을 통해 예외가 인정된다.

또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PCR) 사용이 의무화된다. 비PET 식품 접촉

포장에는 최소 10%, PET 기반 음료병은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은 35%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이 요구된다.

■ INTERVIEW

<주간관세무역정보>가 KTR 류하나 수석연구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합동 세미나’에서 KTR의 류하나 수석연구원(출처: 주간관세무역정보)

Q. EU의 PPWR과 관해 주의할 점을 알려달라.

A. 먼저 PPWR에서 규정하는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와 함께 판매되는 옷걸이, 신발·의류 더스트백, 마스크라 브러시(용기 마개의 일부를 구성), 제품에 직접 부착된 라벨·스티커·슬리브 등은 포장재에 해당한다. 참고로 단독으로 판매되는 옷걸이, 공구함(보관·사용을 위한 제품 자체), 생산 공정 시 사용되는 점착필름(제품의 제조에 기여)은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EU의 PPWR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산업이 있을까?

A. 식품·음료산업은 PFAS 농도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유일한 분야다. 한계치는 ▲개별 PFAS 25ppb, ▲PFAS 합 250ppb, ▲폴리머 PFAS 포함 시 50ppm이며, 잉크·바니시·접착제·코팅까지 포장 단위(packaging unit)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함유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두 번째로 화장품 산업은 PFAS는 적용되지 않지만, 중금속 4종(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 100mg/kg 한도(제5조 제4항)가 적용된다. 마스크라 브러시처럼 용기 마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 요소도 포장재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류·신발·섬유산업의 경우 통상 포장재로 인식되지 않던 옷걸이, 더스트백이 PPWR상 포장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FAS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중금속과 라벨링, 확대생산자책임제(EPR) 의무는 적용된다.

Q.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산업군의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

A. 공통사항으로는 중금속 관련 규정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PPWR을 준수한다는 적합성선언서 및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재는 공급사의 PFAS FREE 선언서만으로는 시장감독당국의 검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언서와 더불어 시험성적서 확보를 권장한다. 화장품산업과 의류·신발산업 또한 포장재 범위를 살펴보고 중금속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Q.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적용되는 직접효력의 규정(Regulation)으로, 27개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

첫째, ‘포장재’의 정의를 통상의 무역 실무 인식과 동일하게 보서는 안 된다. 옷걸이, 가격 및 소재 정보를 담은 행택, 화장품 마개의 브러시, 과일에 붙은 스티커처럼 그동안 부속품으로 분류되던 것들이 PPWR에서는 명시적으로 포장재에 해당한다. HS Code 분류와 PPWR상 포장재 분류는 별개의 판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책임 주체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이 자사 상표로 EU에 진입하는 경우, EU 수입자에게 수출 단계에서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공급망 전반의 정보 확보해야 한다. 중금속, PFAS(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공급사선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술문서는 단일 사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포장재의 경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조자, 수입자 모두 자료 보관 의무가 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시장감독당국이 수입자에게 사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EU 적합성선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관 서류와 함께 관리할 것을 권한다.

“유럽 수출 안 해도 영향” EU발 환경규제, 글로벌 표준화되나

일각에서는 유럽 규제를 글로벌 표준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유럽 내부에서도 규제 속도와 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EU 규제를 무시할 경우 결국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PPWR이 단순히 유럽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R의 류하나 연구원은 “EU처럼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지역이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자체를 EU 기준으로 맞추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포장재를 이원화해 제작하고 판매하기 어려워 결국 규제가 가장 엄격한 EU 기준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 특성, 소비자 취향,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포장재를 단기간 내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PPWR은 식품·화장품·생활용품은 물론 전자·기계 부품 같은 B2B 포장재, 상업용·가정용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김성은 기자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다... 5월 20일부터 중국 온라인 식품 규제 변화

식품안전 책임관리, 해외 판매자·플랫폼까지 적용 확대



농심이 중국의 6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 현장. 농심은 작년 1분기부터 중국 현지에서 신라면 톰바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했다(출처: 농심)

중국정부가 온라인 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식품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뿐 아니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K-푸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5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제정한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규정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관

런 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온라인 식품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에게 ‘식품안전 주체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식품 거래 확대에 따라 허위광고, 무허가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냉장·냉동 관리 부실 등 식품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입점 판매자 ‘실명검증’ 의무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월 27일 공포한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총 6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했는데, ① 온라인 식품거래를 위한 제3자 플랫폼 제공자, ② 제3자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자체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 및 사업자가 포함됐다.

즉, 이번 규정이 중국 내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 규정이 적용되면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자체 쇼핑몰·SNS·웹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식품기업 역시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국정부는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특히 플랫폼 기업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판매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 생산·영업 허가증과 신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최소 6개월마다 재검증해야 한다. 기술 식별이나 현장검사 등을 통해 허위 자격증 사용 여부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 위험관리 목록’을 구축하고, 판매 식품의 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판매 중단, 링크 삭제, 계정 폐쇄,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추천하거나 노출을 확대하는 상품에도 책임을 강화했다. 플랫폼이 식품안전 위험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벌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온라인 식품 판매자, 냉장물류·원산지·광고까지 직접 관리해야

온라인 식품 판매자에 대한 의무도 크게 강화됐다. 판매자는 반드시 식품 생산·영업 허가 취득 또는 포장식품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상품 페이지에는 허가 정보, 식품 라벨, 성분 정보 등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시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이 일치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원산지, 기능, 성분, 검사·인증 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와 기능성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냉장·냉동식품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온도·습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저장·운송·배송 전 과정에서 위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위탁 배송 시에도 물류업체 관리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사실상 해외 기업이 중국에 식품을 판매하려면 현지 물류망까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온라인 식품 판매기업은 자체 식품안전 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식품안전 위험관리 목록'을 구축해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식품 판매자의 관리 항목 ●

구분	플랫폼 제공자	온라인 식품 판매자
필수 관리 항목	• 판매자 허가·신고 정보 확인 • 플랫폼 내 게시 정보의 정확성 점검 • 판매 식품의 법규 위반 여부 모니터링 • 온라인 판매 활동의 적법성 점검 • 기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공급업체 적격성 및 식품 안전성 확인 • 게시 정보와 실제 라벨의 일치 여부 • 저장·운송·배송 환경 조건 준수 • 소비자 민원 및 불만 처리 현황 점검 • 기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식품 판매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최대 20만위안(약 4,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 위반 시 개인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가령 온라인 식품 판매자가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0~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을 단순한 통관 규제가 아니라 중국정부가 공급망 전반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2월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식품안전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에는 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기업 감독규정을 시작으로 6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판, 12월부터 식품 리콜관리 규정 개정 등을 잇달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식품 규정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급성장한 해외 직구·역직구 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aT는 한국 식품기업이 통관 대응 수준이 아닌, 중국 현지 규정에 맞춘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을 비롯해 해외 사업자도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이기에 ▲식품안전 책임자 지정, ▲원산지·성분·광고 문구 점검, ▲냉장·냉동 물류 관리, ▲플랫폼 입점 정보 정비, ▲위기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갖춰야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식품기업에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1993년 베이징사무소를 개설, 1997년에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일찌감치 중국을 공략한 오리온은 지난해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1조 3,207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농심은 2025년 3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신라면 톰바 생산을 시작하고, 채널별 맞춤 전략을 통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월마트, 대윤발(大潤發) 등 대형 매장과 편의점에 입점했으며, 온라인에서는 광고모델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오는 7월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닷컴(JD.com)에 입점할 예정으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박주현의
뉴욕
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로펌 DLA Piper LLP에서의 파견 근무에 이어 뉴욕주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핵심 쟁점

CAPE 시스템 신청 절차와 대응 방안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Int'l Dispute Resolution and Global Trade Practice팀
대한민국·미국 변호사(뉴욕주)

I. 들어가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일련의 관세 조치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일방주의적 관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법원은 IEEPA가 ‘규제(regulate)’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관세 부과(tariffs/duties)’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¹⁾ 이는 1977년 IEEPA 제정 이래 해당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광범위한 경제적 결정을 행정부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비춰 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 절차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1) Learning Res., Inc. v. Trump, 146 S. Ct. 628(2026): 본 사건은 Trump v. V.O.S. Selections 사건과 병합 심리됐음.

Protection, 이하 ‘CBP’)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그동안 수취해 온 모든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령했다.²⁾

특히 리처드 이튼(Richard K. Eaton) 판사는 2026년 3월 4일 자 명령을 통해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신고자(all importers of record)’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명시했고, 같은 해 3월 27일 자 수정 명령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정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finally liquidated entries)까지 확대해, 사실상 IEEPA를 근거로 수취된 모든 관세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이에 따라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이하 ‘CAPE’)을 전자통관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이하 ‘ACE’) 포털 내에 신설하고, 2026년 4월 20일 오전 8시(미 동부표준시) 1단계(Phase 1) 환급 절차를 실제로 개시했다.

CBP가 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되는 IEEPA 관세 규모는 약 33만명의 수입자, 5,300만건 이상의 수입신고, 그리고 총액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³⁾ 사실상 미국 무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환급 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2)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2026 WL 679285(Ct. Int'l Trade Mar.5,2026).

3) CBS News, “Here’s when businesses will start getting refunds for Trump’s IEEPA tariffs”(Apr.29,2026).

이번 호에서는 2026년 5월 12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반영해 1단계 환급 절차의 주요 내용과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한다.

II. IEEPA 관세 환급의 특징

이번 IEEPA 관세 환급은 기존의 환급 체계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으나, 오직 CAPE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환급 방식과 구별된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급의 대상이 되는 관세는 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관세(Fentanyl/IEEPA Trafficking Tariffs)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행위)·122조(국제수지)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환급신청권자는 수출자가 아닌 공식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이하 'IOR' 또는 그가 지정한 면허 소지 통관대리인(licensed customs broker)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IOR 또는 그 통관 대리인이 환급 신청의 주체가 되며, 본선인 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수출한 한국 본사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IOR이 CBP Form 4811을 통해 환급 수령인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당사자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⁴⁾

셋째, 본 환급은 자동환급이 아닌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IT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환급은 일률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IOR 또는 그 대리인이 ACE 포털에 접속해 CAPE 신고서를 직접 업로드해야만 절차가 개시된다.

넷째, 4월 20일 시행된 1단계 환급의 적용 범위는 ① 미정산 수입신고(unliquidated entries) 및 ② 정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의 수입신고에 한정된다. 이는 19 U.S.C. § 1501에 따른 자발적 재정산(voluntary reliquidation) 가능 기간이 정산일로부터 90일이므로, CBP가 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의 여유를 둔 결과다.

다섯째, CAPE는 배타적(exclusive) 환급 경로로 운영된다. 즉, CBP는 IEEPA 관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의신청(protest)이나 사후수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1단계 적용 대상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CAPE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2026년 4월 20일 시행돼 약 3주간 운영되며 다수의 실무적 쟁점이 드러난 IEEPA 관세 환급 1단계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5월 12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4)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Duty Refunds', FAQ section; CBP Form 4811, 'Special Address Notification'

III. IEEPA 관세 환급 절차

1. 요건

CBP가 제시한 환급 절차 중 1단계(Phase 1)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정산 수입신고와 정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의 수입신고에만 적용된다.

다만 CBP는 다음 유형의 수입신고들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1단계 환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사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① 최종정산이 확정된(finally liquidated) 수입신고, ② 화해조정(reconciliation) 대상 신고 또는 09유형(Entry Type 09) 신고, ③ 환출관세환급(drawback) 청구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 ④ 미해결 이의신청(open protest)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 ⑤ 반덤핑·상계 관세(AD/CVD) 정산 지시가 발령돼 정산 대기 중인 수입신고, ⑥ ACE에 미등록됐거나 ACE상 정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수입신고, ⑦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관세이연(duty-deferral) 신고, 일시수입통관(TIB,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신고 및 보증보험사가 IEEPA 관세를 대납한 신고 등이 그것이다.⁵⁾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i) 신청자가 IOR 자격을 갖추거나 면허 소지 관세사를 이용해야 하고, (ii) ACE 보안 데이터 포털 계정과 그 산하 'Importer' 하위 계정을 보유해야 하며, (iii) 환급금이 ACH(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송금될 미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외국 은행 계좌는 인정되지 않음).⁶⁾

2. 환급 절차

1단계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① IOR 또는 그 의뢰를 받아 해당 수입신고를 행한 면허 소지 관세사가 ACE 포털 내 CAPE 탭에서 'CAPE 업로드 템플릿(CAPE Upload Template)'을 다운로드해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한 후, CSV 파일 형식의 CAPE 신고서(CAPE Declaration)를 업로드한다. **하나의 CAPE 신고서에는 최대 9,999건의 수입신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수의 IOR을 대리하는 통관대리인은 여러 IOR의 수입신고를 단일 신고서에 통합해 제출할 수도 있다.**

② 이어서 ACE는 두 차례에 걸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1차 검증은 CAPE 신고서 파일 자체의 형식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 수입신고 각각에 대해 ▲ACE상 해당 신고가 존재하는지, ▲1개 이상의 IEEPA Chapter 99 HTS 코드가 부과됐는지, ▲동일한 수입신고가 동일 또는 이전 신고서에 중복 기재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개별 신고는 거절되지만, 그 외 신고들은 처리가 계속된다.

③ 검증을 통과한 경우 ACE는 해당 수입신고로부터 IEEPA Chapter 99 HTS 조항과 그에 대응되는 관세를 자동으로 제거한 신규 버전의 수입신고서(updated entry summary)를 생성하며, IEEPA 관세를

5) CBP, 'IEEPA Duty Refunds and CAPE', Publication No. 5525-0426(Apr.2026).

6) CBP, 'Fact Sheet: IEEPA Duty Refunds'(Apr.2026).

제외한 신규 관세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한다.

④ 그 후 CBP가 신규 수입신고서를 검토하며, ⑤ 미정산 신고는 CAPE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약 45일 후 정산(liquidation)되고 정산 후 80일 이내의 신고는 그다음 영업일에 재정산(reliquidation)돼, 최종적으로 IOR 또는 Form 4811 지정 당사자별·정산일별로 통합된 환급금이 미국 재무부를 통해 ACH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실무상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CAPE 신고서 업로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로드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신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규 CAPE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다른 신고서에 포함된 수입신고를 중복 기재할 경우 거절 오류(rejection error)가 발생한다.

둘째, **각 수입신고는 단 하나의 CAPE 신고서를 통해서만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CBP는 CAPE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승인된 이후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통상 약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⁷⁾

다만 IOR의 개별 상황(예컨대 관세 과소납부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른 미납 관세에 대한 상계(offset)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한편 IOR은 ACE 포털의 'CAPE Claim Status' 메뉴와 'REV-603 Trade Refund 보고서' 등을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자(Interest) 지급

IEEPA 관세 환급은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이자(statutory interest)를 포함해 지급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관세 납부일부터 정산(또는 재정산)일까지 산정되며, 적용 비율은 미국 법령상 더 유리한 이자율 조항이 적용된다.⁸⁾ IEEPA 관세가 2025년 초부터 대규모로 부과돼 약 1년 이상 미국 재무부에 예치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분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수출 관련 기업들은 환급 신청 시 이자 부분에 대한 적정 산정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5월 12일 기준 CBP는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로, 향후 이에 관한 추가 안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7)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upra note 8('Importers and authorized brokers should anticipate that valid IEEPA refunds will generally be issued within 60-90 days following acceptance of the CAPE Declaration, unless a compliance concern requires further CBP review.').

8) 약 연 6% 수준으로 알려졌다.

IV. 결론 및 기업의 대응 방안

IEEPA 관세 환급은 CIT의 명령에 따라 CBP가 비교적 신속하게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에 옮긴 사안으로, 요건을 갖춰 CAPE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하는 경우 환급금 수령에 본질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① CBP가 구체적인 환급 액수나 환급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경우, ② 이자 계산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③ 1단계 적용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수입한 한국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사가 IOR인지 또는 미국 현지 통관대리인이 신고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신고 주체별로 CAPE 신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ACE 포털 'Entry Summary Details Report(ES-003)'를 통해 HTSUS Chapter 99 조항 (9903.01.xx 및 9903.02.xx) 부과 내역을 추출해 IEEPA 관세 노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적용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9 U.S.C. § 1514에 따른 이의신청을 적시에 병행함으로써 향후 단계의 환급권을 보전해야 한다.

넷째, ACH 환급을 위한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가 ACE 포털에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CBP의 향후 가이드라인 변경(특히 이자 계산 방식, 2단계 일정)과 항소 동향, 그리고 의회의 관련 입법 추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 전략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오렌지 착즙주스의 HS Code

오렌지 착즙주스는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의 ‘오렌지주스’의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면 제2009.12-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해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이나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해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셀러리과 같은 채소)으로 추출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기 바랍니다.

원산지 / 중고물품의 원산지 표시

중고물품을 수입할 때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제76조 제1항의 ‘Made in 국명’ 등의 방식 이외에도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Imported from 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국명'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 <중략> ...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수출입통관 / 무역업 등록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처음 하는데 무역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출입통관 시 무역업고유부호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나 업태에 관한 제한도 없습니다. 즉, 업종, 업태를 불문하고 세관에 수출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기타 사유로 무역업 등록이 돼 있다면 수입신고 시 무역업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무역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세 / 보세판매장 재고물품

보세판매장의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반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인은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해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해 장기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됐다면 재고관리시스템에 해당 물품의 반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형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제출

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요건 / 고압가스캔의 수입요건

철강으로 만든 빈 고압가스캔의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HS Code 제7311.00-1000호에 분류되는 철강으로 만든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용기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용기검사신청확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및 '수입'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

이 하 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관세법」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제241조 제1항 및 제243조), 예외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제244조). 「관세법」 제244조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서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에서, 대법원은 앞선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된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입 시점인 해당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B 회사로부터 칩용 신선 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고, 2021.4.30. 위 신선 감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215호,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이하,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물품은 2021.4.9. C 선박에 적재됐고, 해당 선박은 호주 멜버른항을 출발해 2021.4.27.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다음 2021.5.1. 17시 6분 부산항에 입항했다.

다. 피고는 2022.5.24. 이 사건 물품이 2021.4.30.이 아닌 2021.5.1.에 입항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돼야 한다고 봐 원고에 대해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했다(이하 위 관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2.8.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5.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약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란 ‘대한민국 영역에 반입’되는 상품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 영역’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4.30.에 이 사건 물품은 대한민국에 반입됐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4.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해 0%가, 2021.5.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됨으로써 수입이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 지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인 물류 적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재량권의 일탈·남용).

4. 원심판결의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이 2021.4.30. 수입됐는지 여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이 2021.4.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이 사건 조약은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목에서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한다”라고 규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매년 12.1.부터 다음해 4.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0%, 2021.5.1.부터 2021.11.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141.8%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별표13)].

②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수입’의 정의가 우선 적용돼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약에서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수입’의 정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입’의 정의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은 관세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인 ‘수입’, ‘반입’, ‘수입 신고’ 등에 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 부과에 관해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③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제2조 제4호 가목),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의 ‘4.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 ‘반입’과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가목에서 우리나라 영역에 관한 정의를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외에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규정했으므로, ‘이 사건 상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된 때’는 곧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가 되므로, 이때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조약은 ‘영역(territory)’에 관해 ‘호주의 영역’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의 영역’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등을 들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대해서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조약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조약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목 및 2)목은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수입’이나 ‘반입’에 관해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아 결국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관세법」상 ‘수입’, ‘반입’, ‘수입신고’, ‘관세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선박에 선적된 외국물품은 자유롭게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이동 가능하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이미 수입된 것으로 봐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됐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㉖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호주에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2021.11.30.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적재 물품에 대해 141.8%의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이 과세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㉗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 의무의 존부나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1)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하고(제38조),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출항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49조 제3항 제1호),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5.1. 17시 6분경인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4.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해 0%가, 2021.5.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 적용돼 수입 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5.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해 관세납세 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21.4.30.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됐기에, 수입신고를 입항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 시와 비교해 '세율의 인상'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당초 2021.4.30.경에 접안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안 부두인 부산신항의 이례적인 물류 적체로 인해 입항이 지연됐는바, 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항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해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 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불가피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해 입항이 지연된 경우에도 입항전 수입신고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원고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④ 결국 원고는 2021.5.1. 입항 후 수입신고를 다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돼 141.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바, 입법 미비로 인한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통관의 적정성 및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현저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에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이 2021.5.1. 14시 00분으로 이미 2021.4.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했던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이 사건 선박을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¹⁾,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선박은 2021.4.30. 17시 00분 제5부두 2선석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는데, 부산신항의 혼잡한 사정으로 인해 접안예상시간(ETB, Estimated Time of Berthing)이 2021.5.1. 4시 00분, 2021.5.1. 12시 00분으로 재차 변경됐고, 이에 이 사건 선박은 평균 19knot의 정상 속력으로 항해했을 때 40시간이 소요됐을 거리를, 평균 12knot의 지연된 속력으로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산신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하고 장기화돼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입법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된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5. 대상판결의 요지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해

1) 관련 법령의 해석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 제2.3조는 ‘관세 철폐’라는 제목하에 제2항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는 1)목에서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목에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돼,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항 별표 13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한·호주 FTA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칩용 감자’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매년 12.1.부터 다음해 4.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0%로 규정하는 한편, 2021.5.1.부터 2021.11.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141.8%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

112시간(2021.4.27. 12시 11분~2021.5.1. 17시 6분) 항해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역협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한·호주 FTA는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이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의 적용에 관해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계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

③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돼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봐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④ 한편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 2207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호주 FTA에서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반입’을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해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 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물품(칩용 신선 감자)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5.1. 17시 6분경이었는데, 한·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4.30.까지인 경우에 한해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5.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돼, 이 사건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뤄진 2021.5.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원심이 앞서 본 판단의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어

판례의 사안에서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계절관세의 취지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약에서도 이 사건 물품의 비성수기(12월~4월)와 성수기(5월~11월)의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및 한·호주 FTA에서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와 관련해 ‘수입’ 시점은 선박의 입항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용 안전조끼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노랑고 못생겼고, 그 어떤 옷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검은색 정장 위에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던 2008년 프랑스 도로 안전 캠페인의 문구다. 미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패션 거장조차 그 못생김을 인정하면서도 생명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기꺼이 모델이 됐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안전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때로는 서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유니폼으로 시대의 상징이 돼 왔다. 오늘날 국내의 건설 현장, 물류센터, 도로 작업장 등 산업현장 어디서나 이 조끼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캠페인 광고에 등장한 칼 라거펠트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형광 연두색계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유사한 의류로서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6114.30-1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웨이스트코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끼’로 소매가 없는 상의를 말한다. 직역하자면 ‘허리선까지 오는 상의’라는 뜻인데 영국 남성복이 원조다.

사전적 정의로는 셔츠 위, 재킷 아래 입는 짧은 의복으로서 소매가 없고 앞쪽에 단추가 달려 있으며 깊은 브이넥으로 된 의류를 말한다.

원단에 따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일 경우 제6110호(남녀 구분 없음)에 분류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류의 경우 제6211.3호(남성용), 제6211.4호(여성용)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 편물로 만든 웨이스트코트와 유사한 형태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REFLECTIVE VEST	6114.30-1000 (FCN 2.6%)	Similar articles of waistcoa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6110.30-1000 (FCN 13%)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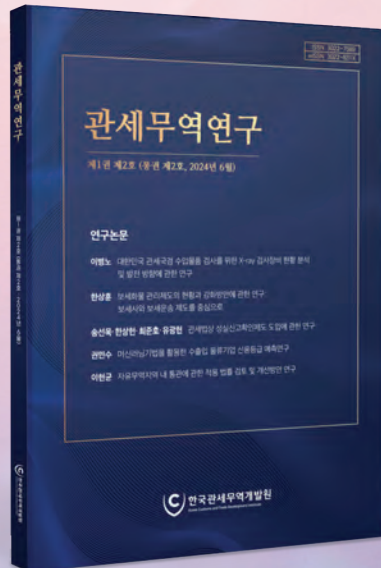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